

확인서

NICE신용평가(주) 귀중

금융투자업규정 제8-19조의 10에 의거 본 건 () 관련 구조화금융 신용평가를 위해 당사가 작성하여 NICE신용평가(주)에 제출하였거나 향후 작성하여 제출할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확인합니다.

1. 작성/제출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,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
2. 작성/제출자료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
3. 작성/제출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·검토하였다는 사실

NICE신용평가(주)는 본건 신용평가를 위하여 확인인이 NICE신용평가(주)에 작성/제출하는 자료나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며, 작성/제출된 자료나 정보(면담 또는 질의 시 확인인이 제공하는 답변 포함)는 확인인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공식적인 의견으로 간주됩니다.

20 년 월 일

확인인

회 사 명 :

대표이사 : (인)

(유의사항)

본 확인서는 본 건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하나의 약정으로 수개의 발행 회차를 포괄하는 경우 본 확인서는 최초 약정시에만 1회 작성되지만, 약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본 확인서는 금융감독기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것입니다. 이점 널리 양해하시어 신용평가업무가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